

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지원하는 등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임(안 제16조제3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은 정)